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8
------	------

제출일자 : 2021. 4. 5.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폐기물 감량 및 적정 처리를 통한 청결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구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구민참여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별표상의 세부 규정들을 관계법령 및 사업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참여 및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 나.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의 개정 에 따라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등을 분리배출 품목에 추가하고 배출요령을 위 지침에 맞게 개정(안 별표 1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 다. 수집·운반 시 과도하게 무거운 100리터 종량제 봉투 규격 및 가격을 삭제함 (안 별표 2 종량제봉투 가격)
- 라. 가정용 태양광 폐패널 배출 시 적정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근거 마련(안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별표의 띄어쓰기 표현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합의기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2021. 2. 26.~ 2021. 3. 18) 결과 : 별도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표 1의 표제 “재활용폐기물” 을 “재활용가능품” 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기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 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 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반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 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병	·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 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에 따라 배출 ※ 유색PET병 및 플라스틱류 등과 구분하여 따로 배출
6. 합성수지 용기·유색PET병·트레이류	· 유색PET병,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 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착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과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로 배출
8.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9. 의류 및 원단류	· 의류, 담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 수거함에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달린 가방, 신발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12.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작은 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은 제외
	·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구리, 양은 등)	
13.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4. 자동차부품	· 폐납산배터리	- 자동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5.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 수거함 등에 배출
16.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별표 2의 1.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 중 “100L” 항목을 삭제한다.

별표 4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 5,000원란에 “태양광 폐패널”을 신설한다.

별표7을 별표 7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4조의3(구민참여)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u>② 구청장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별표 1]</p> <p>재활용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7조제3항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종 류</th> <th style="width: 40%;">품 목</th> <th style="width: 50%;">배 출 요 령</th> </tr> </thead> <tbody> <tr> <td>1. 종이류</td> <td>- 신문지</td> <td>- 물기에 젖기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td> </tr> <tr> <td></td> <td>-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td> <td>-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td> </tr> <tr> <td></td> <td>- 종이컵, 팩</td> <td>-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td> </tr> <tr> <td></td> <td>-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td> <td>-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td> </tr> <tr> <td>2. 캔 류</td> <td>- 철 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td> <td>-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 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td> </tr> <tr> <td></td> <td>-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td> <td>-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td> </tr> </tbody> </tabl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기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 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 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p>[별표 1]</p> <p>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7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품목</th> <th style="width: 35%;">세부품목</th> <th style="width: 50%;">배출요령</th> </tr> </thead> <tbody> <tr> <td>1. 골판지류</td> <td>· 골판지상자 등</td> <td>-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td> </tr> <tr> <td>2. 골판지 외 종이류</td> <td>· 종이팩(살균팩, 멸균팩)</td> <td>-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td> </tr> </tbody> </table>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기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종이컵, 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 철 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 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판,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등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페스티로폴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 가능한 압착하여 부파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이물질 및 부착상표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어 묶어서 배출 - 과일·생선상자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 제조자들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화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제조자들에게 직접 배출 *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페스치로폴은 제외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3. 유리병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기타 종이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태백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특수규격마대에 배출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
5.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색 투명한 생수, 음료 PET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별도의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지정요일에 따라 배출 * 유색PET병 및 플라스틱류 등과 구분하여 따로 배출
6. 합성수지 용기·유색 PET 병·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색 PET 병,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행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시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p>표면적이 50cm²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p> <p>※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p>
8. 발포 합성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p>-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p> <p>-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p> <p>-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p> <p>※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p> <p>※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p>
9. 의류 및 원단류	· 의류, 담요 등	<p>-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수거함에 배출</p> <p>※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달린 가방, 신발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p>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p>-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p> <p>-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p>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p>-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p> <p>※ 깨진 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 또는 특수규격마대에 담아 배출</p>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2. 고철류	· 고철(공기구, 볼트, 너트, 작은 철판,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은 제외
	·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등)	
13.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4. 자동차 부품	· 폐납산배터리	- 자동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15. 식용유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16.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별표 2]

종량제봉투 가격(제13조제2항 관련)

1.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매)

구 분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봉투)
	2017년부터
3 ℓ	90원
5 ℓ	130원
10 ℓ	250원
20 ℓ	490원 (490원)
30 ℓ	740원
50 ℓ	1,250원
75 ℓ	1,880원
100 ℓ	2,500원

[별표 2]

종량제봉투 가격(제13조제2항 관련)

1.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가격
(단위 : 매)

구 분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봉투)
	2017년부터
3 ℓ	90원
5 ℓ	130원
10 ℓ	250원
20 ℓ	490원 (490원)
30 ℓ	740원
50 ℓ	1,250원
75 ℓ	1,880원
<삭 제>	<삭 제>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1,000원	2,000원	3,000원
거울(높이50cm이하) 깨진유리(책상유리크기이하) 돗자리(3.3㎡당)	TV대 가방류(가로50cm 미만) 가스대	가방류(가로50cm이상) 깨진유리(베란다유리크기이상) 난로 문갑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1,000원	2,000원	3,000원
거울(높이50cm이하) 깨진유리(책상유리크기이하) 돗자리(3.3㎡당)	TV대 가방류(가로50cm 미만) 가스대	가방류(가로50cm이상) 깨진유리(베란다유리크기이상) 난로 문갑

<p>목욕탕 수건함 병풍(2폭당) 유아용 목마 유아용 그네 액자(가로, 세로 50cm이하) 카페트(3.3㎡당) 항아리(높이 30cm이하) 화분(1개당)</p>	<p>거울(높이 50cm 초과) 깨진유리(베란다유리크기 미만) 의자(나무의자 1인용) 문짝 밥상(3인 미만) 보행기 서랍장(4단이하) 옷걸이(스탠드형) 신발장(높이120cm 미만) 식기 건조기 싱크대(1폭당) 유모차 유아용 자동차 액자(가로, 세로 100cm 이하) 자전거(3발) 탁자(5인 미만) 책꽂이(2단) 텔레비전(30.48cm 이하) 항아리(높이 30cm초과) 파일케비넷(3단 이하) 환풍기 회의용탁자(5인 미만) 타이어(1개당) 오디오스피커(1개당)</p>	<p>밥상(4인 이상) 신발장(높이120cm이상) 온풍기(50㎡ 미만) 응접세트(1인용 의자) 의자(나무의자 2인용 이상) 에어컨(50㎡ 미만) 재봉틀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오락기 모니터 (DDR오락기 제외) 텔레비전(63.5cm 미만) 탁자(5인 이상) 책꽂이(3단) 파일케비넷(4단 이상)</p>
--	---	---

<p>목욕탕 수건함 병풍(2폭당) 유아용 목마 유아용 그네 액자(가로, 세로 50cm이하) 카페트(3.3㎡당) 항아리(높이 30cm이하) 화분(1개당)</p>	<p>거울(높이 50cm 초과) 깨진유리(베란다유리크기 미만) 의자(나무의자 1인용) 문짝 밥상(3인 미만) 보행기 서랍장(4단이하) 옷걸이(스탠드형) 신발장(높이120cm 미만) 식기 건조기 싱크대(1폭당) 유모차 유아용 자동차 액자(가로, 세로 100cm 이하) 자전거(3발) 탁자(5인 미만) 책꽂이(2단) 텔레비전(30.48cm 이하) 항아리(높이 30cm초과) 파일케비넷(3단 이하) 환풍기 회의용탁자(5인 미만) 타이어(1개당) 오디오스피커(1개당)</p>	<p>밥상(4인 이상) 신발장(높이120cm이상) 온풍기(50㎡ 미만) 응접세트(1인용 의자) 의자(나무의자 2인용 이상) 에어컨(50㎡ 미만) 재봉틀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오락기 모니터 (DDR오락기 제외) 텔레비전(63.5cm 미만) 탁자(5인 이상) 책꽂이(3단) 파일케비넷(4단 이상)</p>
--	---	---

4,000원	5,000원	7,000원
<p>개수대 샬롱 세면대 세탁기 일반케비넷 자전거(2발) 화장대 책꽂이(4단) 컴퓨터전용책상</p>	<p>가스오븐렌지(높이1m 이상) 공기청정기(50㎡ 이상) 냉장고(300ℓ 미만) 변기통 서랍장(5단 이상) 식기세척기 세단기 아향수족관가로, 세로 1m 미만 오디오세트(높이 1m 이상, 스피커 별도) 오르겐 온풍기(50㎡ 이상) 응접세트(2인용 의자) 장식장 정수기(20ℓ 이상) 책상(서랍이 한쪽에 있는 책상) 텔레비전(101.6cm 미만) 회의용 탁자(10인 이상) 책꽂이(5단) 이불 목조</p>	<p>공기청정기(264㎡ 이상) 냉장고(500리터 이하) 디지털 피아노 응접세트(3인용 의자) 에어컨(50㎡ 이상) 책꽂이(6단 이상) 텔레비전(101.6cm 이상)</p>

4,000원	5,000원	7,000원
<p>개수대 샬롱 세면대 세탁기 일반케비넷 자전거(2발) 화장대 책꽂이(4단) 컴퓨터전용책상</p>	<p>가스오븐렌지(높이1m 이상) 공기청정기(50㎡ 이상) 냉장고(300ℓ 미만) 변기통 서랍장(5단 이상) 식기세척기 세단기 아향수족관가로, 세로 1m 미만 오디오세트(높이 1m 이상, 스피커 별도) 오르겐 온풍기(50㎡ 이상) 응접세트(2인용 의자) 장식장 정수기(20ℓ 이상) 책상(서랍이 한쪽에 있는 책상) 텔레비전(101.6cm 미만) 회의용 탁자(10인 이상) 책꽂이(5단) 이불 목조 태양광 페페널(20kg 당)</p>	<p>공기청정기(264㎡ 이상) 냉장고(500리터 이하) 디지털 피아노 응접세트(3인용 의자) 에어컨(50㎡ 이상) 책꽂이(6단 이상) 텔레비전(101.6cm 이상)</p>

9,000원	11,000원	16,000원
<p>냉장고 630리터 이하 보일러(16cal/h 이하) 아향수족관가로, 세로 1m 이상 온풍기(264㎡ 이상) 에어컨(264㎡ 이상) 책상(서랍이 양쪽에 있는 책상) 침대틀1인용(매트리스 별도) 옥매트(1인용) 헬스기구(강화신 헬스기구)</p>	<p>매트리스(1인용) 보일러(16cal/h 초과) 복사기 응접세트(5인용 의자) 장롱(90cm 한쪽) 침대틀2인용(매트리스 별도) 옥매트(2인용) 물탱크(가정용 1톤당)</p>	<p>냉장고 630리터 초과 매트리스(2인용) 자동판매기(음료, 담배, 커피 등) 장롱(120cm 한쪽) 피아노 컴퓨터 오락기 DDR(본체, 모니터, DDR기 포함) 탁구대</p>

9,000원	11,000원	16,000원
<p>냉장고 630리터 이하 보일러(16cal/h 이하) 아향수족관가로, 세로 1m 이상 온풍기(264㎡ 이상) 에어컨(264㎡ 이상) 책상(서랍이 양쪽에 있는 책상) 침대틀1인용(매트리스 별도) 옥매트(1인용) 헬스기구(강화신 헬스기구)</p>	<p>매트리스(1인용) 보일러(16cal/h 초과) 복사기 응접세트(5인용 의자) 장롱(90cm 한쪽) 침대틀2인용(매트리스 별도) 옥매트(2인용) 물탱크(가정용 1톤당)</p>	<p>냉장고 630리터 초과 매트리스(2인용) 자동판매기(음료, 담배, 커피 등) 장롱(120cm 한쪽) 피아노 컴퓨터 오락기 DDR(본체, 모니터, DDR기 포함) 탁구대</p>

※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 7]

※ 열거되지 않은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수수료에
준함.

[별표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4조의3제2항
 - 구민 활동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적 지원 가능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정비·보완하고 도시 청결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민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청소행정과 신성진
연 락 처	2627 - 1475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전문개정 [1997.01.03 조례 제137호]
개정 [1998.01.06 조례 제169호]
개정 [1999.09.22 조례 제236호] (통·반설치조례)
개정 [2000.01.08 조례 제255호]
개정 [2000.09.22 조례 제285호]
개정 [2000.12.16 조례 제29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1.06.30 조례 제321호]
개정 [2001.08.07 조례 제332호]
개정 [2001.12.24 조례 제345호]
(일부개정) 2004.07.16 조례 제 401호
(일부개정) 2006.03.22 조례 제 456호
(일부개정) 2007.10.05 조례 제 512호
(일부개정) 2007.12.28 조례 제 519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9.09.04 조례 제 594호
(일부개정) 2010.01.01 조례 제 602호 [시행 2010.01.01]
(일부개정) 2012.03.07 조례 제 702호
(일부개정) 2013.09.27 조례 제751호
(일부개정) 2013.12.31 조례 제771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789호
(일부개정) 2016.03.11 조례 제849호 타법개정
(일부개정) 2017.05.15 조례 제910호
(일부개정) 2017.07.17 조례 제932호
(일부개정) 2018.08.13 조례 제984호
(일부개정) 2019.10.10 조례 제10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 전문개정 2008.12.24], <개정 2012.03.07, 201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09.22>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03.07>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03.07>
3.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

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페아스콘, 폐블록,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단서삭제 2009.09.04>, <개정 2012.03.07>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9.09.04>, <개정 2012.03.07>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03.07>
6. “가내공업폐기물”이란 가내공장에서 1일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폐합성성유류, 폐합성고무류, 폐합성수지류, 폐합성피혁류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0.09.22>, <개정 2012.03.07>
7. “판매인”이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배출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판매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24>, <개정 2012.03.07>
8. “판매소”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를 말한다. <개정 2001.12.24, 2012.03.07>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신설 2012.03.07, 개정 2013.12.31>
10. “재사용 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신설 2012.03.07>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2013.12.31>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3.07, 2013.12.31>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2013.12.31>
- ③ 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방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등 관할구역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08, 2013.12.31>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금액의 40퍼센트로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의3 별표8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제(가목1)가)의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0.01.08> <단서신설 2001.08.07>, <개정 2012.03.07, 2013.12.31>
- ⑤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내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자치구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4>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폐기물 감량화·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7>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4>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08>, <개정 2012.03.07, 2013.12.31>

③ 삭제 <2001.12.24>

제5조의2(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24>, <개정 2012.03.0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2.03.07>

제5조의3(청결유지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명령기한에 적체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5.24] <개정 2013.12.31>

제5조의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청소봉사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율청소 문화의 정착과 폐기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율청소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용품(빗자루, 집게,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우수 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청소봉사단체의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27]

제2장 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2013.12.31>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정 2012.03.07>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개정 2009.09.04,

2012.03.07, 2013.12.31>

7.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 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명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사항 <신설 2001.12.24>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입찰 등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두 차례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임금 등 대행료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3.>
- ⑦ 제6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인건비성 경비 등 미집행 금액과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3.>

-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되,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08>, <단서삭제 2012.03.07>, <개정 2012.03.07>
-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신설 2012.03.07>
 - ③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 ④ 가내공업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9.22>, <개정 2012.03.07>
 - ⑤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 ⑥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에서 구로 전입한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삭제 <2000.01.08>

제9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그 밖의 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9.04, 2012.03.07, 2013.12.31>

1. 대형폐기물 : 배출자는 배출 전에 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매한 후 배출하거나 또는 금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배출신고를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1.06, 2001.12.24, 2006.03.22, 2012.03.07>
2. 건설폐기물 :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04, 2012.03.07>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관급 종량제봉투인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신설 2009.09.04>, <개정 2012.03.07>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03.07, 2013.12.31>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4.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9.09.04>,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04>, <개정 2012.03.07>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개정 2012.03.07>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09.04>, <개정 2012.03.07, 2013.12.31>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유무.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개정 2013.12.31>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의 준수 가능 여부.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 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⑤ 제1항제3호의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자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규칙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00.09.22> <개정 2009.09.04, 2012.03.07>

[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9조의2(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등) 신고필증의 종류·가격·색상·표기사항·규격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3(신고필증의 제작) ① 신고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신고필증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품목·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은 신고필증 제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4]

제9조의4(신고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신고필증을 납품받을 때에는 제9조의2에 따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신고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필름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4], <개정 2012.03.07>

제9조의5(신고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소로 공급하고 배출자는 신고필증을 판매소에서 구입한다.

[본조신설 2001.12.24], <개정 2012.03.07>

제9조의6(신고필증의 현금교환) 배출자가 신고필증을 구입한 후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이유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 판매인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24], <개정 2012.03.07>

제10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삭제 <2000.01.08>

② 구청장은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01.08, 2012.03.07, 2013.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조 제명 개정 2013.12.31]

제3장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제11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 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 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규칙 제32조의 별표 8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0.01.08>

제4장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13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2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제14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용(5톤 미만)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00.09.22, 2004.07.16, 2012.03.07, 2013.12.31>

② 생활폐기물용 일반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용(5톤 미만)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09.22, 2006.03.22, 2012.03.07, 2013.12.31>

③ 사업장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에서 1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2012.03.07>

제15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7>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재질·용도·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 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16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동종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동일하게 한다.

③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 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03.07>

제16조의3(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03.07>

제17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③ 삭제 <2000.09.22>

제1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삭제 <2000.09.22>

② 골목길 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③ 종량제 대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한다. <개정 2000.09.22, 2007.12.28, 2012.03.07, 2013.12.31>

④ 제3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이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19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4, 2012.03.07>

② 삭제 <2000.09.22>

③ 삭제 <2000.09.22>

제20조 삭제 <2019.10.10>

제20조의2 삭제 <2019.10.10>

제21조 삭제 <2019.10.10>

제21조의2 삭제 <2019.10.10>

제21조의3(신고포상금제)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 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2.03.07>

제22조(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수납 등) 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 고지하여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2013.12.31>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12.3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을 제외한)을 주민이 직접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 운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가전제품류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목재가구 등 그 밖의 대형폐기물은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신설 '98.01.06>, <개정 2012.03.07, 2013.12.31>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부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제24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은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4.12.30.>

제25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09.04, 2012.03.0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개정 2012.03.07, 2013.12.31>

제2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삭제 <2001.12.24>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8.01.06>, <개정 2012.03.07>

제27조 삭제 <2019.10.10>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1.06.30, 2012.03.07, 2013.12.31, 2017.5.15>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2.03.07> <2017.5.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0.01.08, 2012.03.07, 2017.5.15>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03.07, 2017.5.1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2017.5.15>

③ 삭제 <2019.10.10>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①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12.03.07>

② 삭제 <2000.01.08>

③ 삭제 <2000.01.08>

④ 삭제 <2000.01.08>

제5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7.5.15.]

제31조 삭제<2017.5.15>

제32조(청문) 삭제 <2000.01.08>

제33조 삭제<2017.5.15>

제34조 삭제<2017.5.15>

제35조 삭제<2017.5.15>

제6장 보칙

제36조 삭제<2018.8.13>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부칙(제137호, 1997.01.03)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169호, 1998.01.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대형폐기물(사업장배출분 제외)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36호, 1999.09.22)(통반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단, 시흥1동사무소는 제외)"로, "동장"을 "동장(단,시흥1동장은 제외,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제255호, 2000.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5호, 20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3호, 2000.12.1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구청장 및 동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321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2호, 2001.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5호,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1호, 2004.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56호, 2006.0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2호, 2007.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나목 (1) 및 (2)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사실확인회보서중 “평”을 “㎡”로 한다.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에서 ⑭까지 생략

⑮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

에서 까지 생략

부칙(제594호, 2009.0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2호, 2010.01.0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2호,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1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1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89호,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0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 제932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에서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 생략

부 칙(제984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에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